「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❍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9월 4일, 평창군수 제출

❍ 회부일자: 2026년 9월 14일 회부

❍ 상정일자: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6년 9월 14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산림과장)

가 . 제안이유

❍ 산양삼 산업 육성 및 바이오산업의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임업분야 전문교육 및 임업인의 임산물 재배・생산 기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・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
❍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의 기능(안 제4조)

❍ 센터의 이용허가 및 신청, 이용, 강사의 위촉, 강사수당 등의 지급,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안 제9조)

❍ 센터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, 이용료의 감면, 반환,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 안 제13조)

❍ 센터의 운영방법 및 위탁운영, 위탁계약의 해지,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 ~ 안 제17조)

❍ 손해배상, 권리양도 제한, 지도·감독, 준용 규정 등(안 제18조 ~ 안 제21조)

❍ 전문위원실 자구 수정(안 제11조제2호: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공공기관이 →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본 조례안은 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의 운영과 시설 이용, 임업 관련 교육, 산양삼·임산물의 전시·홍보 및 관련 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

❍ 산림의 보전과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「산림기본법」의 취지에도 부합

하는 것으로, 센터를 중심으로 임업인의 전문교육과 산양삼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다만, 안 제12조에서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정하면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허가이용일 5일 전과 3일 전을 반환액 지급의 기준으로 두고 있으나, 안 제5조제2항에서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허가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❍ 안 제5조제2항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, 이용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용자의 ‘변경’과 ‘취소’에 따른 처리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. 예를 들어, 이용예정일 3일 전에 이용일자 등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, 이를 허가사항의 단순 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, 기존 이용을 취소하고 새로운 이용을 신청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이용료의 반환 여부 및 반환액이 달라질 수 있어, 이용자의 의사표시 및 담당자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.

❍ 따라서 안 제5조제2항에서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계획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이용예정일 3일 전을 이용자의 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의 기준시점으로 정하고, 이후 이용일이 가까워질수록 반환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❍ 아울러, ‘반환할 수 있다’로 임의·재량적으로 규정하기보다 ‘반환하여야 한다’라는 의무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❍ 종합적으로, 이번 제정은 산양삼 및 임산물 산업 육성과 임업인 교육을 위한 센터의 기능을 제도화하고 시설 이용 및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체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 이용료 반환에 대한 조항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 「수정가결」

7. 수정안 요지

❍ 안 제12조(이용료의 반환) 중 이용료 반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수정하고,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이용예정일 5일 전과 3일 전을 기준으로 둔 안에서 3일 전부터로 기준을 정하고 이용허가일 당일까지 이용료를 차등 반환하도록 정비함.

8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9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「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」 수정안 1부.

2. 「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」 수정안 대비표 1부.

[붙임 1]

「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」

의 안 번 호	555호 관련

제안연월일 : 2026. 9. 14.
제 안 자 : 조례특위위원장

1. 수정이유

❍ 안 제12조에서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정하면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허가이용일 5일 전과 3일 전을 반환액 지급의 기준으로 두고 있으나, 안 제5조제2항에서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허가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

❍ 이용예정일 3일 전을 이용자의 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의 기준시점으로 정하고, 이후 이용일이 가까워질수록 반환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정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❍ 또한 ‘반환할 수 있다’는 임의·재량적으로 규정에서 ‘반환하여야 한다’라는 의무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내용

❍ 안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”를 “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불가항력의”를 “불가항력적인”으로, “경우 :”를 “경우: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취소·정지된 경우 :”를 “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: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.

3. 이용자의 사정으로 허가이용일 전 취소하는 경우 반환액은 다음과 같다.

가. 허가이용일 3일 전 취소: 전액 반환

나. 허가이용일 2일 전 취소: 이용료의 100분의 50 반환

다. 허가이용일 1일 전부터 당일 취소: 반환불가

「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」

평창군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”를 “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불가항력의”를 “불가항력적인”으로, “경우 :”를 “경우: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취소·정지된 경우 :”를 “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: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.

3. 이용자의 사정으로 허가이용일 전 취소하는 경우 반환액은 다음과 같다.

가. 허가이용일 3일 전 취소: 전액 반환

나. 허가이용일 2일 전 취소: 이용료의 100분의 50 반환

다. 허가이용일 1일 전부터 당일 취소: 반환불가

[붙임 2]

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2조(이용료의 반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	제12조(이용료의 반환) --------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1.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: 전액 반환	1. ---------- 불가항력적인 ---------- 경우: ---------
2.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이용이 취소·정지된 경우 : 전액 반환	2. ----------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: ----
3. 허가이용일 5일 전에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: 전액 반환	3. 이용자의 사정으로 허가이용일 전 취소하는 경우 반환액은 다음과 같다. 가. 허가이용일 3일 전 취소: 전액 반환 나. 허가이용일 2일 전 취소: 이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다. 허가이용일 1일 전부터 당일 취소: 반환불가
4. 허가이용일 3일 전에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: 반액 반환	<삭 제>